

# 예산총칙

제 1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계	5,009,167,372	4,988,491,110	20,676,262
일반회계	4,328,024,924	4,334,375,778	△6,350,854
특별회계	681,142,448	654,115,332	27,027,116
기타특별회계	424,644,279	418,780,332	5,863,947
농어촌주택사업	11,485,810	11,485,810	
의료급여기금	383,132,969	377,269,022	5,863,947
동부권특별회계	30,025,500	30,025,500	
공기업특별회계	256,498,169	235,335,000	21,163,169
지역개발기금	256,498,169	235,335,000	21,163,16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,323,73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